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	2019-05-03 10:51:00
처리결과 안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904-265151)은 다 무처리민원으로 지정되어 국가공무원 호봉경력인정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력 인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국가공무원 경력인정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접속하셔서 규정은 법령란에서 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분야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임용되는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경력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셋째, 직렬 또는 직류별로 경력인정을 위해 인정되는 자격증, 박사학위 등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연구직렬에 인정되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현행 규정상 경력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은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록물법과 위 규정은 별도의 법령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사안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김민영 주무관 (☎044-201-8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